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7. 3.(월) 11:00, 배포 2023. 7. 3.(월) 06:00
(지면) 2023. 7. 4.(화) 조간

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사업 공모

- 7. 3.(월)~7. 10.(월) 모집, 참여선사 등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국내 무역항에서 액화천연가스(LNG),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및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3일(월)부터 7월 10일(월)까지 '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'에 참여할 선사 등을 공모한다.

국제해사기구(IMO)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,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추진 선박의 상업용 운항이 가속화 되는 등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. 이에, 싱가포르항, 로테르담항 등 해외 주요 선진항만에서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높은 연료공급 가격 등의 이유로 인해 아직 항만 내에서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
일반적으로 해외 선사들이 연료공급 계약 시 선박연료 공급실적(Track Record)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해양수산부는 이번 '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'을 통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.

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,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*하면 된다.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연료 공급 및 수급선사에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, 정박료를 50% 감면(항차 당 최대 5천만 원)해주고, 항만 시설 운영자에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의 20%를 감면(실증 1회당 최대 1억 원)해주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.

* (우편) [30110]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김운석 주무관 / (전자우편) kimunseok@korea.kr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"국제 항해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,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앞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."라며, "국내 무역항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선박연료라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, 참여 선사 등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.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	책임자	과 장	최종욱 (044-200-5770)
	항만운영과	담당자	사무관	장기봉 (044-200-5773)

※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의 공모 안내문 참조

□ **공모내용**

○ '23년 내 무역항에서 STS(Ship to Ship) 또는 PTS(Port to Ship) 방식으로 친환경 선박연료(LNG, 메탄올, 바이오디젤, 암모니아 등)를 공급하는 경우,

* 다만,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PTS 방식의 LNG 선박연료 공급은 친환경선박연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 대상에서 제외

- 「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해당 선박연료 공급 작업과 관련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

* 단,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(감면액)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당시의 [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] 내용에 따른 변동될 수 있음

[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표 2]

<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(무역항 관련) >

사용료 종류	감면율	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
1. 선박료 가. 선박 입출항료	50%	(7) LNG, 메탄올 등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 (연료공급선박 및 연료수취선박으로서 각각 항차 당 선박료 감면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)
나. 접안료 및 정박료	50%	(11) LNG, 메탄올 등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 (연료공급선박 및 연료수취선박으로서 각각 항차 당 선박료 감면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)
3. 항만시설 전용사용료	20%	(1) LNG, 메탄올 등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실증을 지원하는 항만 (실증 1회당 최대 1억 원)

□ **공모 절차**

○ (공모 기간) '23.7.3(월) ~ '23.7.10(월)

○ (제출 서류) 사업계획서, 공동 참여기관 참여의향서 등

○ (평가 방법) 민간전문가 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평가

○ (평가 기준) 사업계획 타당성·실현가능성,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등

□ 지원 사항

- 「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해당 선박연료 공급 작업과 관련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
- 「선박입출항법」에 따른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관련 해수부 및 전문연구기관의 공동 검토·보완 및 신속한 승인
- 해수부, 항만공사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관련 관계 법령 및 규제 이슈 협의 및 선제적 해소 지원